

폐수 ☐ 수탁처리업 등 록 신 청 서 ☐ 재이용업					처리기간 15일	
신 청 인	①상 호(명 칭)		사업자등록번호			
	②성 명(대 표 자)		주 민 등 록 번 호			
	③주 소		(전화번호 :)			
④사 업 장 소 재 지		(전화번호 :)				
⑤작 공 일		년 월 일		⑥설치완료일		년 월 일
⑦폐수배출시설 및 재이용시설						
시 설 명		규 격		대 수		
⑧수 질 오 염 방 지 시 설						
처리대상폐수				처리능력		m ³ /일
처 리 방 법						
시 설 명		규 격		대 수		
⑨폐수운반방법						
「수질환경보전법」 제62조제1항 전단, 동법 시행령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제2항에 따라 ☐ 폐수수탁처리업, ☐ 폐수재이용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귀하						
※ 구비서류					수수료	
1. 사업계획서 1부					10,000원	
2.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각 1부.						
3.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각 1부.						
4. 폐수성상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.						
5. 공업용수 및 폐수성상별 각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의 설치부위 표시도면 1부.						
6.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(이동식탱크로리 또는 용기운반차, 고정식관망 이용 등)						
7.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 사본(원본 확인) 1부.						
8.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(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) :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,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						
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신청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						

※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 쪽)

